

정책토론회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순 서 —————■

■ 사 회

- 연 강 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 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안심소득제 도입방안.....	7
-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음의 소득세제.....	15
- 김 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본소득제vs안심소득제비교-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중심으로.....	20
-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복지구호의 최고 버전인 기본소득 제안을 왜 주저해야 하는가?.....	27
-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안심소득제 도입 방안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기본소득의 광풍

201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기본소득의 광풍이 밀어닥칠 것 같다. 일부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 모두 또는 일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이다. 우리는 각각에 대해 개관한 후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 대표적인 복지제도들 대신에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에 근거한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보인다.¹⁾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는 것보다 안심소득제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며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이 지원에는 생계, 주거, 교육, 자활, 의료, 해산, 장제 등 7개 급여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4인 가구에 지급되는 월 지원액은 생계급여 1,273,516원과 주거급여(서울) 307,000원을 합해 1,580,516원이다. 연 지원액은 $1,580,516원 \times 12 = 18,966,192원$ 이다. 이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가 1년 동안 받는 교육급여는 수업료 1,450,800원 + 교과서대금 131,300원 + 학용품비 53,300원 = 1,635,400원이다.

1) 본서에서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에 근거한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안심소득(safety income) 또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라고 부르기로 한다.

만약 이 가구에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 3,270,800원이 추가되어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합은 연 22,236,992원이 된다.

2016년 생계급여 예산은 3조 2,728억원이고 지원대상은 135만명, 81만 가구(2015년과 동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289억원이고 지원대상은 80만 가구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451억원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4조 7,22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47만명과 타법수급자 10만명을 합해 157만명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2016). 이 예산을 지원대상자수로 나누면 1인당 연 300만원 정도를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것이다. 위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합 22,236,992원에 이 의료급여액을 더하면 34,236,992원이다. 즉 소득인정액이 없고 두 자녀가 고등학생인 서울 거주 4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의 합은 연 34백만원 정도이다. 자활사업 예산은 자활급여 3,273억원을 포함하여 3,802억원이다(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 지원대상은 5만명(2015년과 동일)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를 전담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 받는다. 다른 소득들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와 상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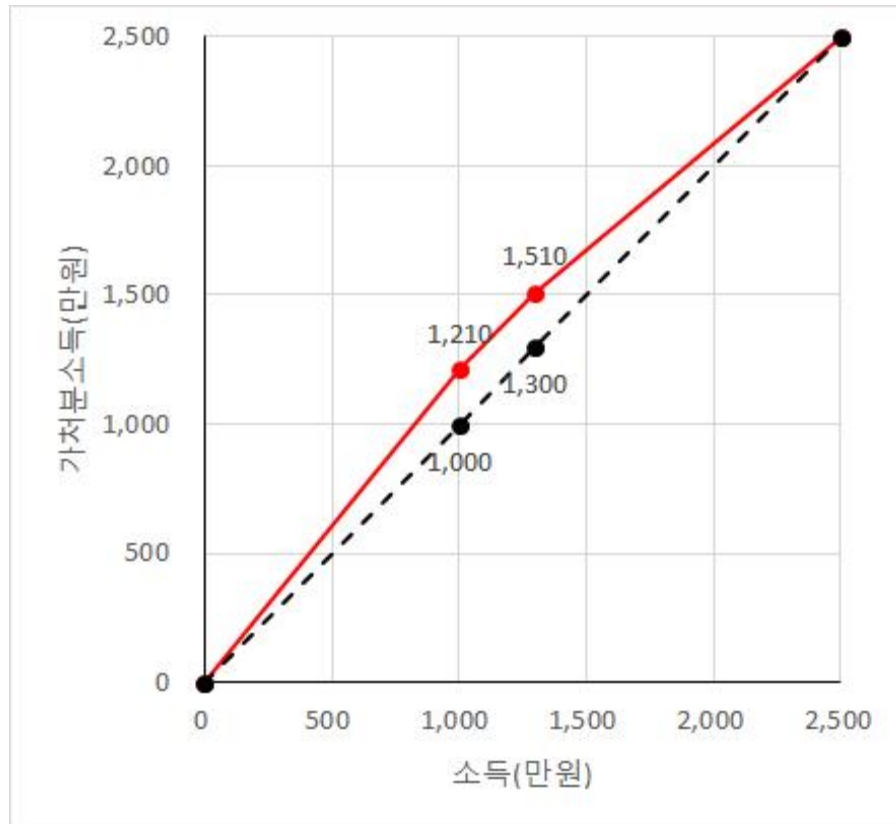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국세청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및 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최대 지원액은 가구당 210만원이며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의 최대지원액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그림 1]과 같다. 근로나 사업소득 1,000만원 미만에는 그 소득의 21%, 1,000 ~ 1,300만원 사이에는 210만원, 1,300 ~ 2,500만원 사이에는 점점 작아져서 2,500만원이 되면 없어진다(taper out).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 수급자도 수령 가능하다(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도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은 합계액이 1억 4

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없지만,²⁾ 생계급여 미수급자이면서 교육급여 수급자는 수령할 수 있다.



[그림 1] 근로장려금(맞벌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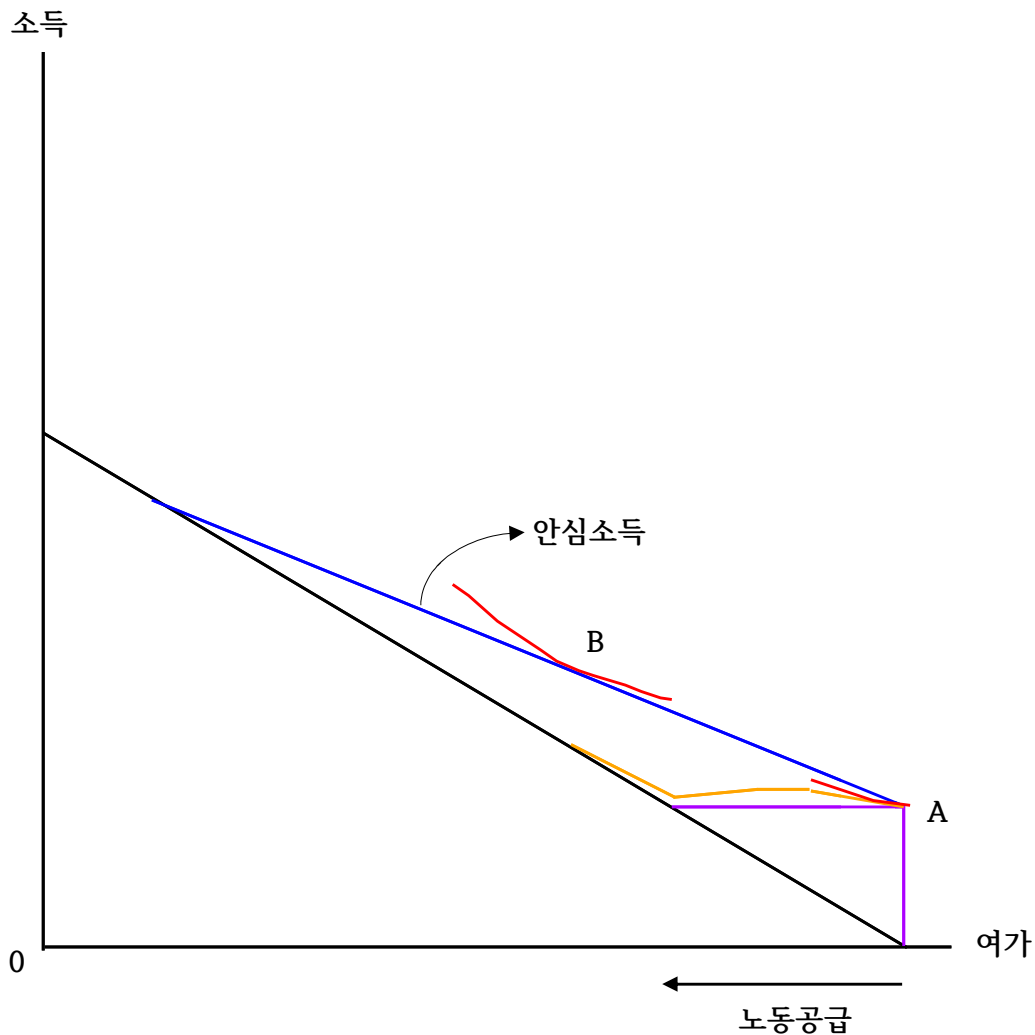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종합적 평가

소득인정액이 월 1,273,516원 미만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월 1,273,516원, 연 15,282,192원을 보장받는다. 월 1,273,516원 미만의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이 가구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합이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 연 3,684,000원(서울 거주)을 더하면 [18,966,192원 + 근로장려금]이 된다.

Moffitt(2003)의 분석에 따라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여기

2)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국세청 2016).

서 검은색 사선이 복지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의 임금선이다. 이 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임금률(w , 예: 시간당 임금)이다. 보라색 선이 생계 및 주거급여이고 주황색 선이 근로장려금이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므로 일할 유인이 없으며,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임금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연소득 1,000만원까지는 $0.21w$ 에 지나지 않아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보다 낮다면 노동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유보임금률보다 높더라도 약간만 일한다. 빨간색 선은 무차별곡선으로 $0.21w$ 가 유보임금률보다 낮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노동공급이 0인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A 점을 선택하여 노동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2] 생계·주거급여·근로장려금과 안심소득제의 노동공급 효과 비교

5. 안심소득제의 설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how)”, “얼마큼(how much)”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는 우선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식별해서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다(Friedman 1962, p. 191). 특정 직종, 산업, 연령대, 노동조합 전반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계층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의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시장을 통해 작동하여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Friedman 1962, p. 191).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보호법제, 청년고용 할당제, 가격보조, 관세나 무역장벽 등이 이 두 번째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제도가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임을 논증한다. 그리고 “얼마큼”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한다.

위에서 지적한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심소득제를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 급여 및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신설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미만까지 안심소득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 소득세의 면세점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그 이하의 안심소득제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2016년 4인 가구 기준 월중위소득은 4,391,434원이고 연중위소득은 52,697,208원이므로 연소득 5,000만원 면세점은 우리나라 4인 가구 연중위소득 수준이다.³⁾ 안심소득세율은 40%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w , 근로시간 t 라고 하면 안심소득은

$$0.4 \times (5,000\text{만원} - w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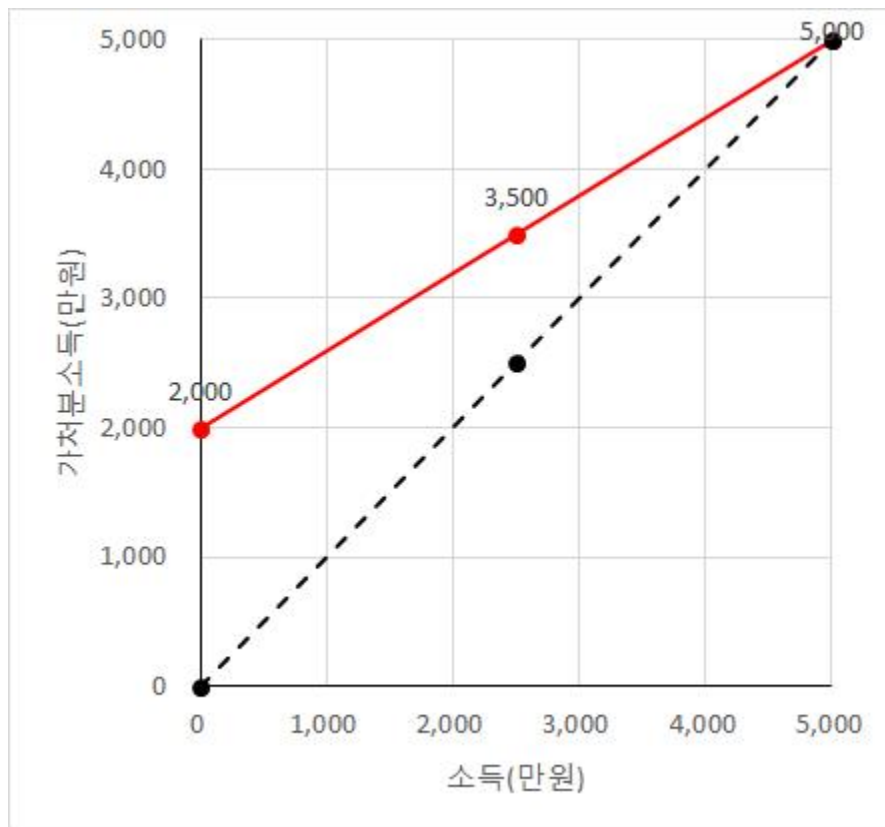
이다. 그러므로 가처분소득은

$$wt + 0.4 \times (5,000\text{만원} - wt) = 2,000\text{만원} + 0.6wt$$

이다([그림 3] 참조). 안심소득제의 특징은 절편(2,000만원)과 임금선 기울기의 절댓값($0.6w$)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주거급여는 절

3)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중위(median)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2,471만원과 2,350만이다. 이것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4,942만원($= 2,471\text{만원} \times \sqrt[4]{4}$)과 4,700만원($= 2,350\text{만원} \times \sqrt[4]{4}$)이다. 하위 25%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1,579만원과 1,632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3,158만원과 3,264만원이다. 상위 25%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3,426만원과 3,198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6,852만원과 6,396만원이다.

편(18,966,192원)만 있는 것이고, 근로장려금에 의하면 임금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0.21w$ 에 지나지 않는다. 안심소득제는 이 둘을 결합하면서 임금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다. 이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 (4인) 가구에 적어도 연 2,000만원을 보장한다.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연 2,000만원을 지원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보다 더 강하게 근로할 유인(stronger incentive)을 제공한다. [그림 2]의 파란색 선은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는 경우의 임금선이다. 빨간색 무차별곡선과 파란색 임금선이 접하는 점이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하므로 근로자는 B 점을 선택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이 시행되는 현재보다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현행 생계, 주거, 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대신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더 강한 근로유인이 제공되어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그림 3] 안심소득제

4) 국가가 적어도 1인당 연 500만원을 보장한다.

6. 안심소득제의 기대효과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 유인보다 근로 역유인(work disincentive)을 제공하여 노동공급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 생계, 주거, 자활 급여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위의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제야말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프리드만의 제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위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하였다. 프리드만은 모든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음소득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 의료, 해산, 장제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계, 주거, 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4인) 가구당 2,000만원(국민 1인당 500만원)을 보장해 주고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60%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심대한 고용감소를 야기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하락시킨다(박기성 2016). 위의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및 경제성장을 하락 효과 대신에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안심소득제는 어떻게 다른가? 기본소득은 본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가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 한국의 추계인구는 5,125만명이다.⁵⁾ 기본소득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25조 6,250억원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75%에게 지급하면 연 38조 4,375억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51조 2,500억원이 소요된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500만원이면 각각 128조 1,250억원, 192조 1,875억원, 256조 2,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모든 가구(국민)에

5) 출처: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NUM=1

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소득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격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없다.

안심소득제는 국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나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그 소득에 반비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연 소득 5,000만원 미만 가구가 5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 2,000만명)가 있다면 안심소득제로 가구 당 평균 1,000만원이 지급되므로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⁶⁾ 안심소득제와 중복되는 다른 복지제도(예: 생계, 주거, 자활 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가 폐지되면서 그 급여 및 수반되었던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각종 누수가 차단될 것이다. 더욱이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지원 받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을 증대시켜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림 2]의 B 점에서 검은색 사선까지의 수직 거리가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의 국가 지원액이다. 이것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되는 생계급여(A 점에서 황축까지의 수직 거리)보다 적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100만원을 버는 직장의 일을 하지 않고 생계 및 주거급여로 연 18,966,192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안심소득제에서는 이 일을 하고 연 1,5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국가의 지원액이 3,766,192원만큼 줄어든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무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안심소득제에서는 [그림 3]의 예에서와 같이 무소득 가구가 2,000만원을 받고, 국가가 모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며, 소득 5,000만원 미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벌어들인 소득(earned income) 즉 시장소득보다 많게 된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안심소득제는 현금을 확실하게 지급해 주어 가처분소득을 2,000만원 이상으로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가구에게 안심소득제가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유리하다.

6) 1,000만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에 2,000만원부터 소득이 5,000만원인 가구에 0원까지를 단순 평균한 것이다. 가구소득 분포를 알면 정확한 소요 예산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에 박기성·변양규(2016)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안심소득제의 소요 예산이 37조 3,026억원이고,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0.036 낮추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음의 소득세제

김 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 음 소득세제 대두의 배경

- 최근 지속적인 복지확대로 인해 재원조달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에 연구는 매우 중요함
- 박기성 교수께서는 기본소득 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음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를 안심소득제라는 구체적인 이름하에 우리나라 소득세제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
- 실업의 증가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서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시의적절함

2. 음 소득세제의 장점

- 음의 소득세제에 대한 최근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반해, 박교수님의 연구는 이 제도의 장점과 도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음
 - 먼저 이 제도의 원 주창자라 할 수 있는 프리드만의 저작을 조명
 -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지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설명
 - 또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이 제도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 주요 연구내용 1: 이론적 측면

- 무차별곡선에 기초한 표준적인 노동공급 이론을 활용하여 노동공급 유인에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세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음 소득세제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임

○ 주요 연구내용 2: 실증적 측면

- 안심소득제의 재정비용을 대략 50조원 내외로 간접적으로 추산하고, 보건·복지·노동분야 재정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을 보임

○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나 최저임금인상과 비교하여 음의 소득세제가 지니는 장점을 잘 분석해주고 있음

- 먼저 재정소요 비용의 측면에서 음의 소득세는 단순한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보다 장점이 많아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더 적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임
- 또한 노동공급 유인의 강화와 행정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음 소득세제가 지니는 장점으로 인해, 이 제도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나 최저임금인상 강화보다 나은 정책대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위험이 높은 반면, 음의 소득세제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움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음 소득세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주창

- 기존에 음의 소득세제에 대한 최근 연구가 거의 없었음
-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판단됨

○ 기본소득제의 현실적인 대안

- 현재 공약으로 일부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는 사실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한 정도의 낮은 보장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당 50만원, 가구당 20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전제하고 있음
- 기본소득제도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나 장애를 최소화하는 음의 소득세 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실에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소득세제의 문제와 사회보장 지출제도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이중적인 장점이 있음
- 기능적 관점에서 음의 소득세는 소득세 단일세율 제도의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노동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보장

- 노동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연구는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불완전한 결합 대신에 음의 소득세제라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공급의 유인과 소득보장의 수준을 높인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높은 행정비용과 낮은 소득보장 수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장려세제를 분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음의 소득세제의 틀 하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보완 및 개선 사항

○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와 관계

- 기본소득과 관련한 역사적 연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20세기 이후 현대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기본소득제도와 음소득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의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책적 측면에서 두 제도가 갖는 특성과 차이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개인 기준 vs 가구 기준

- 음 소득세제나 기본소득 제도 모두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특히,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는 개인이 속하는 가구의 특성(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음
- 이는 음 소득세제의 재정비용을 계산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주의가 필요함

○ 안심소득제의 재정비용(소요예산)

- 안심소득제가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기존의 복지 또는 소득보장 관련 제도가 무엇이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심소득제의 재정비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먼저 소요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함
$$\text{소요예산} = \text{음의 소득세(기본소득 지급액)} - \text{양의 소득세 세수} ?$$

“안심소득제는 국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나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그 소득에 반비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연 소득 5,000만원 미만 가구가 5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 2,000만명)가 있다면 안심소득제로 가구 당 평균 1,000만원이 지급되므로 50조원의 예산이 필요..”

-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소요예산이 약 37조원으로 낮게 추정된 것은 가구소득의 면세점이 5000만원이라는 조건과 관련 있어 보임
- 개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소용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소득세 세율 40%의 현실적 수용가능성

- 40%의 높은 단일 소득세율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는 점이 여전히 음의 소득세를 비현실적인 기본소득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줌
- 여기서 40%의 세율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함
- 40% 소득세율에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하면 개인의 실제 부담률은 소득 대비 50%를 훌쩍 초과함
- 이러한 면에서 이 제도의 실현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함

○ 안심소득제에 의해 대체되는 복지지출들

- 주택부문 예산이 기본소득에 의해 대체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
- 기본소득 제공은 기초연금 이외에 추후 국민연금 조정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음;

“보건·복지·노동분야 2016년 중앙정부 사업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자활급여) 4조 6,819억원, 기초연금 7조 8,692억원, 노동 17조 2,950억원, 주택 19조 4,367억원,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1조 8,244억원을 합한 51조 1,072억원의 거의 전부는 우리가 제안한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므로 절약...”

○ 기타

- 소득안심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제목으로 보이나, 이 제도의 내용이 음의 소득세제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음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비교 - 소득불평등 개선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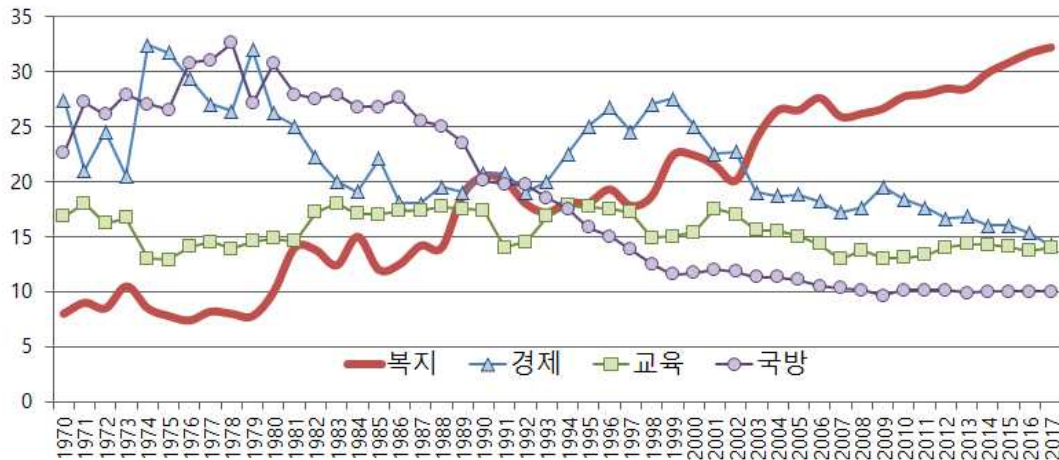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쉬우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합의하는 것은 어려움

-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에는 동의하기 쉽지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
- 현재로서는 사회보장의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
따라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얼마나 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이 상당히 중요
- 이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
2003년 이후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최대 비중을 차지
2017년 예산안 (총 400.7조 원) 중 32% (130조 원)가 복지예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재정의 효율적 분배 및 집행은 중요
-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비용은 혜택의 확대 없이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15~64세 인구 100명 당 0~14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37.2명에서 2030년 58.5명, 2050년 87.2명으로 급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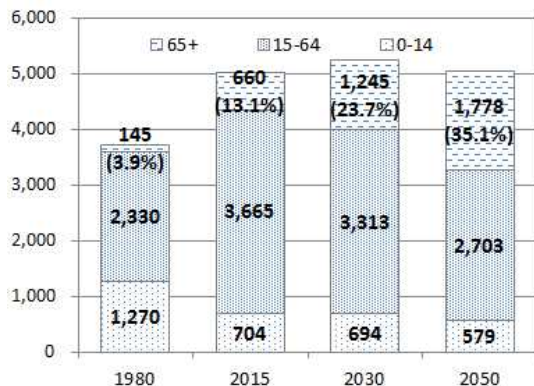
<그림 11> 우리나라 예산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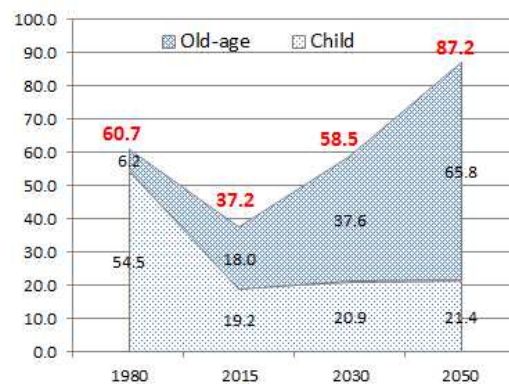
자료: 재정통계

<그림 12>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구성)



(dependency ratio)



자료: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UN

<https://esa.un.org/unpd/popdev/ProfilesOfAgeing2015/index.html>

주: dependency ratio는 15~64세 인구 100명 당 해당 연령대 인구 규모를 의미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

- 다수 국민에게 재산, 소득,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제도가 기본소득제이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소득제는 1인당 최대 연 100만 원 수준으로 의미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규모
핀란드에서 지난 1월부터 실험 중인 기본소득제(월 560유로=약 70만원) 수준의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약 309조 원 소요(현재 정부예산의 77% 규모)

- 핀란드 등 기본소득제를 실험하는 모든 국가들의 목적은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혜택을 대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
-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고부담·고복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근간을 두고 있음
-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급적 많은 이에게 선심을 베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비교

- 어떤 복지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추정을 통한 실현 가능성 점검, 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 비교 등이 필요
- 우선, 안심소득제의 소요 예산을 추정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를 활용하여 가구의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안심소득제 하에서의 인정소득(처분가능소득에서 안심소득제로 대체될 각종 사회수혜금을 제외한 소득)을 계산
 - 가구원 규모 및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
 - 기존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사회수혜금을 제외하고 안심소득제 하에서 지원받을 금액을 추가하여 가구별 처분가능소득을 신규로 산출
 - 안심소득제 하에서 소요되는 총예산을 지원금액의 합에서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기존 지원금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
- 기본소득제에서 지급될 1인당 지원금액을 산출
 -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동일 예산 당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안심소득제 예산규모와 동일한 예산을 기본소득제에 사용한다고 가정
 - 안심소득제 소요예산 총액을 15세 이상 인구에 똑같이 나눠 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1인당 지원금액 산출

개인별로 조건 없이 지원금을 나눠줄 경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신규로 산출 (기존 처분가능소득에서 기본소득제로 대체될 각종 사회수혜금을 제외하고 1인당 기본소득 x 가구원 수만큼의 기본소득을 추가)

- 가구간 소득에 따른 후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소득을 통계청 방식과 동일하게 균등화

현재 시장소득, 현재 처분가능소득,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을 균등화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사용하는 소득자료는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 후생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 방식을 통해 균등화
균등화한 소득을 가구원 각각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단위의 소득분배지표를 계산(OECD 방식)

- 균등화된 네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불균등 지수를 산출하여 현행 제도,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의 소득불균등도 완화 정도를 비교

지니계수: 소득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P90/P10: 하위 10% 경계소득(하위 10%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소득)대비 상위 10%의 소득 비율

5분위 배율: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소득 비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산층 비중: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DER 양극화지수: 소득분포가 양 극으로 갈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0과 1 사이 지수로 숫자 클수록 양극화가 심함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였을 경우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소득 불평등도 개선 효과를 보임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5이며 현행 조세 및 복지제도 하에서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69

현행 소득재분배정책도 지니계수를 0.036 포인트 (11.8%) 개선하여 상당한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있음

-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0.231으로 크게 하락하여 0.074 포인

트 (24.3%) 개선 효과가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예산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지니계수는 0.261로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0.008포인트 개선에 그침

시장소득 대비 0.044 포인트(14.4%) 개선에 그쳐 추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불균등 완화효과를 보임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개인의 소득이 증가는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인 불평등도는 개선되지 않음

기본소득제 하에서 지니계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지원금이 높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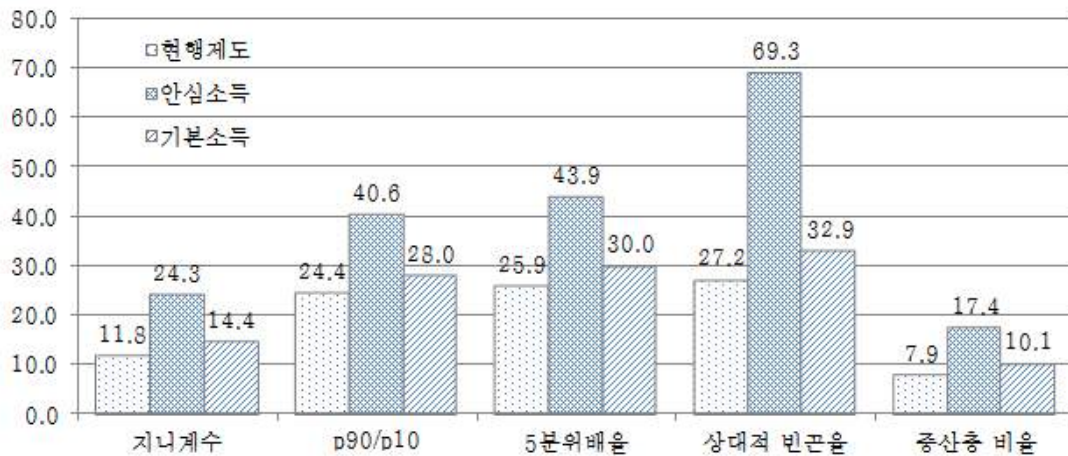
<표 4>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 비교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
지니계수	0.305	0.269	0.231	0.261
P90/P10	4.68	3.54	2.78	3.37
5분위 배율	5.67	4.20	3.18	3.97
상대적 빈곤율(%)	14.2	10.4	4.4	9.5
중산층 비중(%)	67.3	72.6	79.0	74.2
DER 양극화지수	0.197	0.184	0.173	0.182

주1: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2015년)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주2: 지니계수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한 소득불균등 지수로서 0과 1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클수록 소득불균등도가 심함을 의미. P90/P10은 경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 배율을 나타냄. 5분위 배율은 하위 20% 평균 소득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의 배율을 나타냄. 한편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중산층 비중은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가구의 비중을 나타냄. DER 양극화지수는 소득분포가 양 극으로 갈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0과 1 사이 지수로 숫자 클수록 양극화가 심함을 의미

<그림 13>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 (%)



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0.305) 및 각종 소득불균등 지수를 현행 제도, 안심소득제 및 기본소득제가 얼마나 개선하는 지를 퍼센트로 나타냄

- 그 외 P90/P10, 5분위 배율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비해 안심소득제가 월등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보임
- 한편,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2%이며 현재 조세정책 및 소득재분배제도 하에서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4%로 3.8%p 하락
-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하락하여 시장소득 기준 대비 무려 9.8%p 하락
 이는 안심소득제 하에서는 소득분포 상 중하위에 분포한 가구가 집중적으로 지원받기 때문
-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경우 9.5%로 4.7%p 하락하여 기본소득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재분배 제도와 거의 유사
- 중산층 비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유사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중산층 비율 증대 효과가 가장 크며 기본소득제는 현행 제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

추정 결과,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는데 약 18조 원의 예산 소요

- 안심소득제 실시 시 소요액은 약 26조 2,050억 원
- 그러나 안심소득제가 대체할 기존 사회수혜금 규모는 약 7조8,521억 원(예산 상의 규모가 아니며 가계가 보고한 가계동향조사 상 사회수혜금 규모임.)
- 따라서 안심소득제 시행 시 소요되는 순예산은 약 18조3,529억 원
- 201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10.1조 원), 근로·자녀장려금(1.8조 원) 외에도 노동(17.3조 원), 주택(19.4조 원) 등 상당한 예산이 복지제도에 쓰임
- 안심소득제의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복지혜택 중 일부를 추가로 폐지함으로써 안심소득제를 훨씬 낮은 예산으로 실현 가능

안심소득제 시행 이후 전체 가구 중 약 89.7%가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거나 현재 처분가능소득을 유지

-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사회수혜금 공제 이후에도 최소한 현재 처분가능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는 1,006만 가구로 전체의 89.7%
전체 인구 중 89.6%인 3,171만 명이 안심소득제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현 수준 유지
-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1분위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연간 700만 원 증가
1~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도 모두 증가
6~10분위 가구의 평균은 감소하지만 50~61만 원 수준에 불과

<표 5> 안심소득제 실시 이후 소득 증가(내지 유지) 가구 및 인구

소득 분위	가구		인원		연간 소득증가분
	가구수	비중	인원수	비중	
1	1,363,233	98.3	3,488,069	98.4	7,007,732
2	1,109,291	97.4	3,475,340	98.1	5,045,298
3	1,059,967	94.3	3,388,324	96.0	3,015,204
4	995,588	91.3	3,290,893	93.0	1,747,513
5	933,320	86.8	3,113,390	88.1	495,943
6	833,142	80.5	2,859,461	80.8	-505,406
7	879,530	83.4	2,907,881	82.2	-560,424
8	915,728	85.7	3,025,834	85.5	-590,307
9	945,711	86.3	3,010,549	85.1	-445,365
10	1,027,358	89.1	3,148,964	89.0	-614,752
합계	10,062,868	89.7	31,708,705	89.6	

주: 소득분위는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복지구호의 최고 버전인 기본소득 제안을 왜 주저해야 하는가?

이 상 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I. 기본소득 등장 배경

- 최근 국제사회에서 등장하는 복지체계의 전폭적 개선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제도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서구에서 불붙고 있는 기본소득의 배경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미래사회의 불안 등 보다 근본적 문제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보임
 - 주로 불평등의 심화 내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임금소득으로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것(상하위 10% 소득간 차이의 심화)
 - 중산층의 붕괴
 - 4차산업혁명과 같이 로봇과 디지털의 등장에 따라 밀려나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
 -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저성장 타인 청년실업과 충분하지 못한 복지 현안 문제의 개선 한계가 문제되고, 대선 정국이라는 시기와 교합하여 이슈로 등장한 것으로 보임
 - 청년실업의 증대
 - 노인층의 빈곤
 - 장애인 가족이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생활 여건 등
- 기본소득 등장의 원인인 문제의식은 넓게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미

시적 대선이슈로 부각되고, 선진국에서는 거시적 미래사회 경제사회복지체제 대응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II.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에 대해 주저하는 이유

- 기본소득은 실업, 노령 등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와 차원이 다른 노동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지구호 최고의 버전인데, 왜 우리가 수용 여부에 대해 주저해야 하는가?

1. 해외의 기본소득 사례와 기본틀

- 기본소득 도입에 부분적 한시적 실험으로 착수한 국가는 핀란드로 알려져 있고 알려진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기존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되 기본소득으로 대체, 따라서 일부 시민 기본소득 도입 이후 기존 복지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함
 - 그간 핀란드의 실업자들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회안전망 체계하에서 놀고 먹는 실업자 양산 문제를 고치기 위해 기존 실업수당을 대체하는 기본수당으로서 노동을 유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다고 함
 - 기존의 복지체제를 대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이지만 추가 재정 소요 문제, 기본소득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혜자 간 또 다른 형평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잔존할 것이라고 함
- 스위스는 실험 착수 도입에 실패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 된 이유는,
 -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수혜 축소 가

능성이 제기되며

- 노동 유인과 무관한 제도로 누구는 일해야 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받는 복지수혜의 형평 등의 우려 때문에 알려짐
- 도입 여부는 달리하지만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기본소득 대체로 기존복지 수혜의 축소 우려, 노동과 연계 없는 복지제도의 부작용, 자원 조달 문제 등이라 할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

- 국내에서 소개되거나 공약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프레임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국내에서 핀란드식 기본소득과 같이 기존 복지에 상당부분 대체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언급은 발견되지 않아 기존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가적 복지제도로 보임
-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모든 시민에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제도는 틀림이 없음
- 보편적 복지제도의 최고 버전에 해당하는 성격상 본질적으로 노동을 유인하는 복지제도와 거리가 멀
- 위와 같은 국내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기존의 복지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 복지로서 보편 광범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원조달이 문제되는데, 이는 추가적 국민적 조세부담 증세 내지 기존 재정의 분배 문제로 귀결됨

- 국민 증세나 기존 재정의 분배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더 시급한 실업, 교육, 취약계층, 국방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지국가의 모델로 자주 거론해 왔던 유럽 복지제도 대부분이 노동유인과 연계된 복지제도였고 국내에서도 이른바 무상복지 논란 때마다 선별 또는 근로유인 연계 복지제도 필요성이 모색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노동유인과 연계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는 국민들 간 또 다른 로또 문제로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것임

3. 기본소득 제도의 과제

- 기본소득제도는 무엇보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추가 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함
- 국내에 복지와 관련 있는 실업, 교육, 주택, 취약계층 등과 복지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경제와 국방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쌓여 있는데, 추가되는 재원에 대하여 국가 재정배분시 우선 순위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
- 근로유인과 연계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수혜자의 대부분에 해당될 노동력의 중소기업으로 취업기피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 기반을 흔들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조세기반과 국민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거시적 정책 검토가 필요
- 이른바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내 여건에 맞게 검토한 것으로 매우 건강한 복지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16.6.6.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http://www.hankookilbo.com/v/9d8783260d6e43bab072d81a4705b700>)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1.27. '핀란드 정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7/story_n_8736722.html)

강남훈,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 복지국가연구회 월례토론회, 2016.9.9.

남재호,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복지국가연구회 월례토론회, 2016.9.9.

남종석, 어떤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기본소득론 비판①(2013.8.12. [http:// www w.reidian.org/archive/58740](http://www.w.reidian.org/archive/58740)), ②(2013.8.13. [http://www.reidian.org _archive /58785](http://www.reidian.org/_archive/58785))

박기성, 안심소득제, 2017.3.28.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16.6.6.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http://www.hankookilbo.com/v/9d8783260d6e43bab072d81a4705b700>)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1.27. '핀란드 정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7/story_n_8736722.html)

강남훈,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 복지국가연구회 월례토론회, 2016.9.9.

남재호,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복지국가연구회 월례토론회, 2016.9.9.

남종석, 어떤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기본소득론 비판①(2013.8.12. [http:// www w.reidian.org/archive/58740](http://www.w.reidian.org/archive/58740)), ②(2013.8.13. [http://www.reidian.org _archive /58785](http://www.reidian.org/_archive/58785))

박기성, 안심소득제, 2017.3.28.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612호(순화동, 바비엥3차)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